

[별표 3]

하천점용허가기간(제21조제1항관련)

점 용 의 유 형	점 용 기 간
1. 유수의 사용	
가. 공업용수의 사용	5년
나. 농업용수의 사용	10년
다. 생활용수의 사용	10년
2. 토지의 점용	5년
3. 하천부속물의 점용	5년
4.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및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영구
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의 매설을 포함한다.)	5년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위한 점용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5.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1년
6.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7. 스케이트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나. 유선장의 설치	3년
8. 식물의 재식	1년
9. 선박의 운항	3년